

	<h2>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</h2>	규정번호	3-4-14
		제정일자	2012. 9. 1.
		개정일자	2024. 9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7.4.1.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.
2. 삭제 <2017.4.1.>
3. “교육·복지”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 (개정 2017.4.1.)

제3조(장애학생에 대한 배려)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4.1.)

제4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에서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 (개정 2017.4.1.)

제5조(교수·학습지원) 교수·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육, 수업,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편의 제공 및 지원
2. 수강신청 교육지원인력 제공 등 수강신청 지원 (개정 2021.3.1.)
3. 수업지원 교육지원인력 연계 등 학습지원 (개정 2021.3.1.)
4. 기타 장애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(개정 2017.4.1.)

제6조(대학생활지원)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7.4.1.)

1. 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 지원
2.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, 개인상담 (개정 2021.3.1.)
3. 진로상담,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
4.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제7조(특별지원위원회)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개정 2017.4.1., 2024.9.1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,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9.1.)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
2.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(개정 2015.5.1., 2017.4.1., 2018.9.1., 2019.8.1., 2021.3.1., 2024.9.1.)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8.9.1.)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17.4.1.)

- 1.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
- 2.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- 3.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- 4. 장애학생의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
- 5.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10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 단,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장애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교무학생처의 전담직원이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7.4.1., 2021.3.1.)

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(개정 2017.4.1.)
- 2. 교직원,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- 3. 장애학생 교육·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(개정 2017.4.1.)
- 4.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등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(개정 2017.4.1.)

③ 장애학생지원 부서의 총괄책임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. (개정 2017.4.1.)

제11조(지원요청) ① 장애 또는 보호자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지원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.

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심사청구)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며,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